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47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1. 11.

##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학년 학생으로 2019. 6. 27. 점심시간에 친구 ●●● 외 2

명과 함께 4층 매점에 앉아 있었고, 그때 친구 ●●●과 3학년 선배와 시비가 있었으며, 이후 3학년 선배들을 따라 3학년 교실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7. 10. 청구인에게 『특별교육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고, 피해학생 조치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관할 경찰서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불리 조치 결과를 내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다.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 사건 당시, 전혀 관계도 없는 당사자로 있다가 친구 ●●●이 폭력을 당해 죽을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위협을 무릎 쓰고 말린 것이고,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이기도 한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전담기구 개최와 관련 학생 사실 조사, 그리고 위원회 개최가 절차상 하자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나. 이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3학년 학생들과 목격자들, 그리고 1학년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백초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통상 목을 잡기보다는 몸통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의 친구 ●●●이 3학년 □□□을 폭행하였을 때 청구인이 백초크를 풀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가한 백초크는 ●●●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해당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지속성 없음(0점), 반성정도 없음(4점), 화해정도 높음(1점) 총 11점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정되었으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교육’ 처분으로 조치를 경감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인 점을 최대한 살피어 고려한 것으로 결국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양정을 과하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감 조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학년 학생으로 2019. 6. 27.경 점심시간에 친구 ●●●의 2명과 함께 4층 매점에 앉아 있었고, 그때 친구 ●●●과 3학년 선배 □□□ 등이 시비가 있었으며, 이후 청구인 등은 3학년 선배 □□□ 등을 따라 3학년 교실로 이동하였고, 3학년 □□□ 등이 위 ●●●을 집단으로 폭행하자, 청구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의 목을 감싸 조이는 행위를 한 사실(백초크) 등이 인정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자 □□□의 목을 감싸 조이는 행위(백초크) 등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친구 ●●●이 선배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선배의 폭행에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그리고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으로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과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I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